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 세미나 2016  
Diakonia Seminar 2016  
(주제: 디아코니아와 다문화)

“디아코니아”가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일 시 : 2016년 6월 5일(주일) 오후 5시  
2016년 6월 12일(주일) 오후 5시  
장 소 : 춘천동부교회  
주 최 : 춘천동부교회 사회봉사위원회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 목 차

[ 인 사 말 ] - 3

### [ 세미나 1 ]

인구 절벽과 다문화 사회 - 4

박천웅 목사

다문화 사회와 디아코니아(설교 본문: 룻기 1:1~5) - 30

박천웅 목사

### [ 세미나 2 ]

디아코니아 측면에서 본 이주여성 인권보호 - 31

박란이 박사

저녁예배 설교 - 65

손인웅 목사



## [ 인 사 말 ]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의 고유한 문화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집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90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3.76%에 해당합니다.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다문화 가정의 출산, 유학생의 증가 등을 추산하면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타문화권에 대한 배려의 정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신학적 방향성을 확립하고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2011년에 디아코니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이래로 사회의 약자들과 지역사회 현안을 주제로 삼아 매년 개최한 ‘디아코니아 세미나’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디아코니아 세미나의 주제는 ‘디아코니아와 다문화’로 정했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주민센터와 이주민여성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구절벽과 다문화사회’ 라는 제목으로 안산이주민센터 대표이신 박천웅 목사님께서 현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디아코니아 측면에서 본 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제목으로 대전이주여성쉼터 소장이신 박란이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실례와 그에 대한 인권보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미나 이후 저녁 예배 시간에는 최초로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강원 지역대회 및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디아코니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동참해야 할 사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을 다해 주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 다문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동부교회

김 환 호 목사

[ 세미나 1 ]

# 인구 절벽과 다문화 사회

박천응 목사<sup>1)</sup>

## 미래 한국 사회 주요 이슈

미래준비위원회(15년)	한국개발연구원(12년)	국민대통합위원회('14년)
저출산.초고령화사회(1위)	저출산.고령화(1위)	저출산고령화등 인구구조대응
불평등 문제(2위)	소득계층간 양극화(2위)	사회갈등완화와 양극화해소
미래세대삶의 불안정성(3위)		저성장시대 고용과노동
고용 불안(4위)		

1) 장로회신학대학원, 인하대학교 박사(다문화학 전공)이자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국경없는마을 이사장.

## 1. 한국의 다문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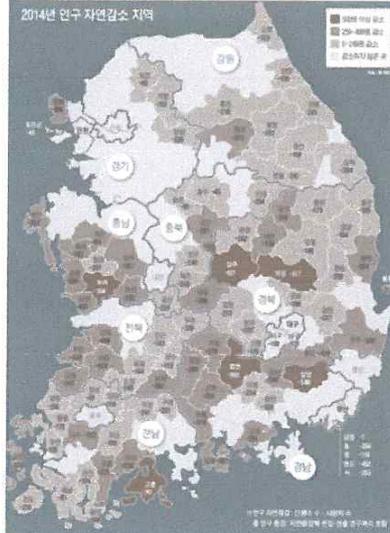
### 1) 저출산 고령화

=> 덜 태어나고, 더 늙어가는 사회

- 2012 인구 5천만
- 2015 인구절벽(55년생, 60세 되는 은퇴시기)
- 2017년 생산력 인구 = **-15만명**
- 2017년 고등학생 인구 = **-12만명**
- 2018 고등학생 < 대학생 인구 역전
- 2018 노인인구 비율 18% 고령사회
- 2018 이후 인구절벽의 상황이 되는 한국 사회
- **2028년** 자연인구증가 = **0**
- (출산률-사망률=자연인구증가율)
- **2030년** 자연인구 증가 = **-&**

## 학교 자리엔 요양시설이... 지자체 226곳 중 95곳 '인구 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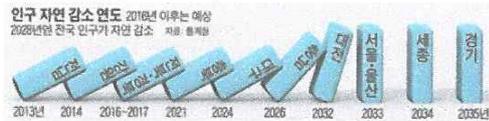
- 신생아 줄고 노인 사망자 늘어 - 경북 군위, 사망이 출생의 3배
- 강릉시는 초·중·고 학생 수보다 경로당·노인대학 인원이 많아
- 전남, 한국 최초 '초고령사회' - 올해 65세 이상이 20% 넘어
- "유치원·제과점·사업체 줄고 노인 대상 업종만 살아남아"



조선일보 2016-0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17318&sid1=001>

##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 시작됐다

- 2013년 전남 이어 강원도 합류... 전북·경북도 내년부터 ...인구감소→경기침체→저출산...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 우려



인구 절벽을 맨 먼저 맞은 **전남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931명과 1236명이 자연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1400명 더 많아 인구 감소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강원도 역시** 2013년에는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225명 많았으나 2014년(342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400여명 인구가 연속해서 자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 강원도 신생아 수 1만662명은 전국 인구 통계 작성 이 시작된 1925년 이후 강원도 역사상 가장 적은 규모였다.

조선일보 2016/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177277&sid1=001>

## 2) 한국의 인구절벽과 경제

- **2016년 부터 인구절벽 시장되는 한국적 상황**
-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1차이고, 1968년부터 1974년까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다.
- $1955+47=102$  (한국은 2002년 베이비붐 세대 소비 최고 소비 정점 시작)
- 1955년생 60세( $55+60=105$ ) 되는 해 = **2015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
-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
- **2018년은 한국에서 출생인구가 정점을 이룬 1971년생이 정확히 47세가 되는 시기**
-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 (2017년 부터 생산성 인구감소)

## 한국,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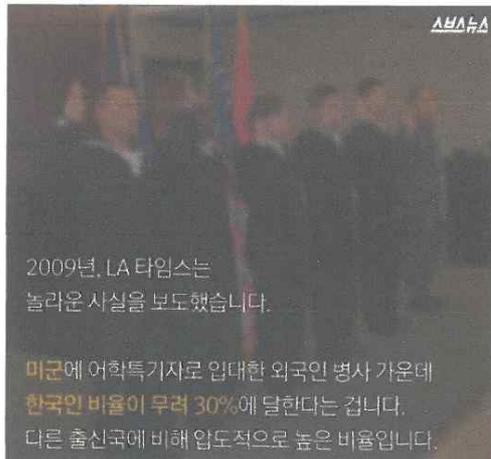
- **1) 경제전망:**
- 인구추세로 보아 한국의 '소비흐름'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
- 2020년 이후부터 한국의 소비 추이는 수 십 년간 내려가지만 할 것 - 일본 처럼, 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확대했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2) 인구절벽 후 경제 특징- 장기적 불황, 집값 폭락, 마이너스 금리**
-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많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지닌 세대'
- 인구절벽 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
- 부동산 자산은 처분돼야 하지만
- 2차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 세대는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 부동산, 금융 자산 매각, 일생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3) 국가부채: 700조(2012~2015년 150조 증가)**



## 한국,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2)



## 유학생, 출국유예 청소년(3) 한국국적 포기 미군입대로 시민권 획득 MAVNI 프로그램



2009년, LA 타임스는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군에 어학특기자로 입대한 외국인 병사 가운데  
한국인 비율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겁니다.  
다른 출신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 국적신청자 보다< 포기자가 더 많아

동아일보 2015-01-24



- ◆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1만 5488명)보다 많았다. 2009년 이후 처음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50124/69255203/1>

## 해외 이민자의 후손들 한국으로 역 이민 러시

동아일보 2015-01-25



- ◆ 재외 동포 700만 시대
- ◆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드물다”며 한국으로 귀환하는 동포가 늘고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역 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124/69255282/2>

## 4) 저출산과 사회복지 위기



### 주요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2044년 적자 발생해 2060년 고갈
건강보험	2022년 적자 발생해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적자 발생해 2028년 고갈
산재보험	2019년 적자 발생해 2030년 고갈

주요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출처: 국민일보, 2051년? 2060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2015-03-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id1=001&oid=005&aid=0000750440>

출처: 한겨레, 정부 "건보 등 10년뒤 고갈 시작"...사회보험료 인상 가능성, 2015-12-0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451.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451.html)

## 5)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 1)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
- 2) 생산력 인구의 감소(고속연 포함)
- 3) 실업의 증가
- 4) 고령 인구의 증가
- 5) 사회복지 재정의 감소
- 6) 국가 인구경쟁력 취약화
- => **인구 및 경제적 대안으로서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형성의 추진 가속화**
- => **2018년 개방적 이민정책 전환**

## 인구절벽과 대체이민

- 2016년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703.9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
- 그 후 감소하여, 2024년에는 3,500만 명을 밑돌고 ,
- 2037년에는 3,0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 이민추계에 의거 한국은 이민국가로 변화 절실
- **(통계청, 2011)**

## 대체이민효과와 국내정책

- 옥스퍼드대학 David Coleman : 인구통계 만능주의
- -인구특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숫자와 관련된 편협한 인구통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 -대규모의 이민유입이 가져올 정치사회구조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 문제 특히 사회통합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 -인구고령화는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며, 현대
- 사회는 장래에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 높은 부양부담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 -인구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것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1) 국가이익 중심의 이민정책 입장

윤인진(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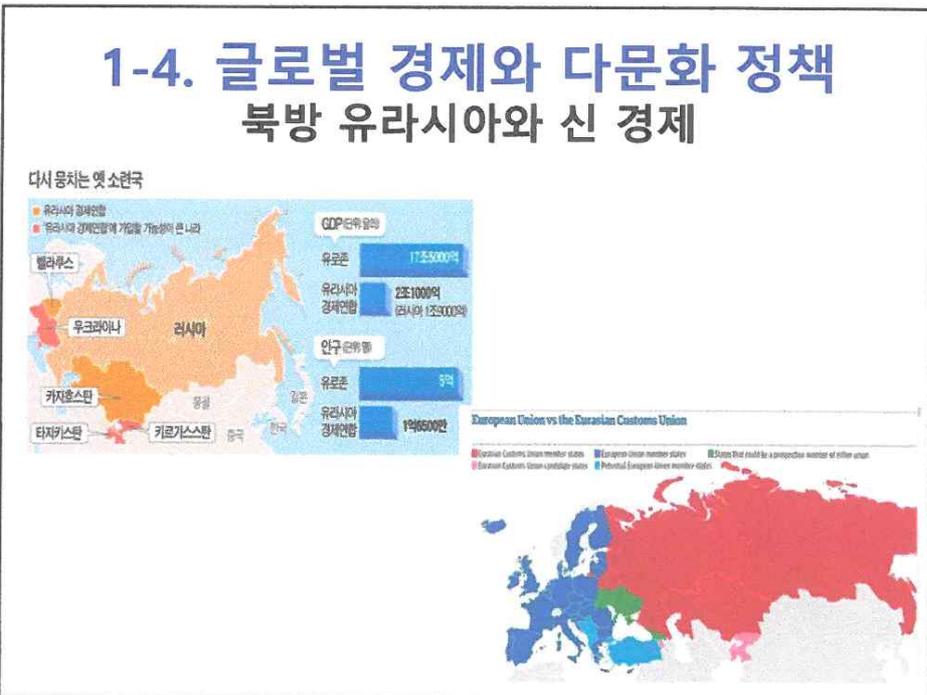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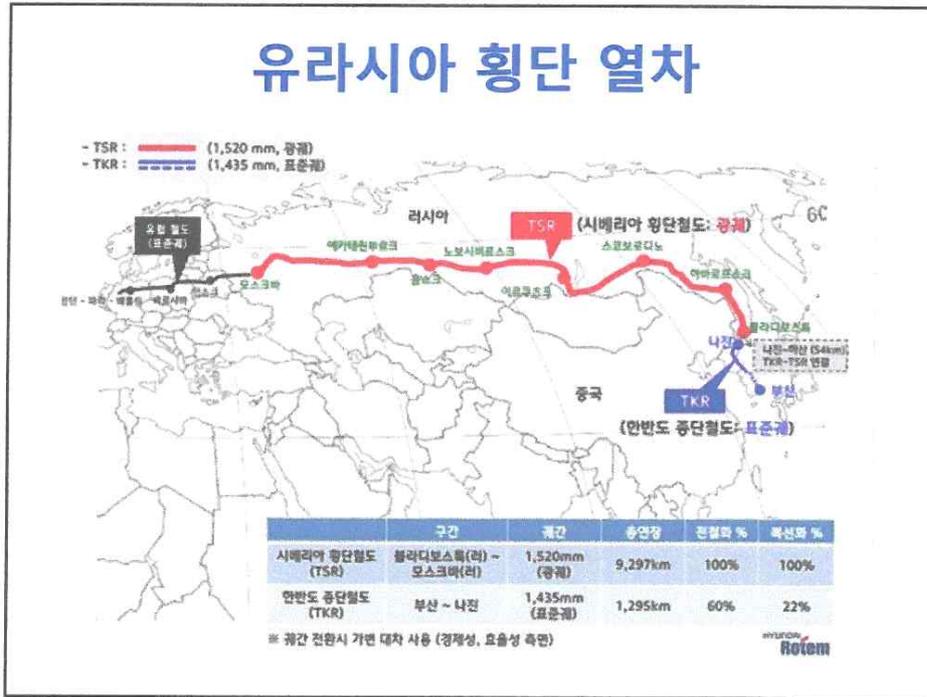
- (1) 남북통일을 고려 할 때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주의
- (2) 대체이민자로 외국적 동포 우선정책
- (3) 이민정책을 국가의 인구 및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 (2)저출산 고령화 이민정책 제안

-전광희 (충남대)

-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당면과제이며, 대체이민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의 명시적 구성요소로 하여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대체이민 유입은 사회경제 통합 정도를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 대체이민의 유입은 광범위한 인구정책의 수단으로서,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전문 지식인, 유학생, **이주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동북아 4개국 '동북아항로 개설' 본격화



## 전환기 한-중동 관계를 반영한 정부의 대중동 정책 방향 천명

윤병세 장관, 중동 순방으로 본격적 **대중동 외교** 시동

걸프국가와의 경제협력 공고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중동 외교의 지평을 레반트 지역까지 확대

12.19~12.21 요르단



요르단 일정

- 12.19(금) 자타라 시리아 난민캠프 방문
- 12.20(토)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한-중동 협력포럼 참석자를 위한 안전 주재
- 12.21(일) 오라, 제1차 한-중동 협력 포럼 개최식 기조연설 주재, 요르단 외교장관 면담





## 대통령의 이란 방문



## 이태원 이슬람사원, 터키가 새로 짓는다



이태원 이슬람사원 350억 들여 재건축... 2~3년內 완공  
 서울 이태원의 명소인 한국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모스크)이 이르면  
 2~3년 안에 장엄하고 웅장한 오스만 튀르크 양식의 대형 모스크로 재탄  
 생할 전망이다. 한국 이슬람교가 건립된 지 40년이 된 현 성원 건물의 재  
 건축을 추진하자 터키가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제안해 재건축 작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5.04.09)

### 3. 국내 이민 정책 과제

#### 1) 이주민 가족초청문제

- 1) 국내 '비전문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목적으로의 가족 초청 불허
- 2)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장기 별거 상태의 인도주의적, 인권적 문제
  - - 이주노동자와 그가족을 위한 권력협약
  - - 이주아동권리협약
- 3) 국민인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및 거주



## 2) 장기 체류자 정책 전환

###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03.31. 현재, 단위 : 명)

- E-9 비자도 9년 6개월로 전환

체류 자격별	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취 업 (H-2)	재외동 포 (F-4)	영 주 (F-5)	유 학 (D-2)	거 주 (F-2)	기타
인 원	1,943,576	266,835	279,852	334,819	125,224	76,163	39,311	821,372
비 율	100.0%	13.7%	14.4%	17.2%	6.4%	3.9%	2.0%	42.3%

## 장기 체류자로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 (1)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불법체류문제와 정주화(난민 불허자 포함)
- (2) 다시 늘어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 (3) 2만 명이 넘는 10년 이상 미등록 이주 노동자
- (4) 미등록 이주 가정 아동의 방치
- (5) 인도적 체류자 자녀의 문제(G1 비자)

### 3) 주민으로서 결혼이민자

○ 국민의 배우자 연도별 증감 추이(단위 : 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년3월	'16년3월
인 원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0,222	152,025
전년대비 증감률	2.1%	2.6%	1.6%	0.1%	0.2%	-	1.2%

○ 혼인귀화자(누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3월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66,474	77,203	84,933	93,953	101,560	108,526	109,376

### 4) 다문화 정치의 부상

○ 유형별 국적취득 현황 (2016.3)

종류 연도	총 계		귀 화		국 적 회 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1년	26,785	18,355	24,034	16,090	2,751	2,265
2012년	24,290	12,528	21,121	10,541	3,169	1,987
2013년	21,266	13,956	18,291	11,270	2,975	2,686
2014년	17,079	14,200	14,331	11,314	2,748	2,886
2015년	19,351	13,534	16,721	10,924	2,630	2,610
2016년 1~3월	4,680	1,370	4,144	1,115	536	255



## 5) 다문화 지역사회통합

사례: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의 전제

- 꿈꾸는 자만이 ‘**꿈의 실현**’ 을 맛 볼 수 있다.
-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되는 것이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디자인**’ 할 수 있다.
- 행복한 세상의 기초는 ‘**작은 실천**’ 으로 이루어진다.
- 다문화 공동체 사회는 ‘**자신의 비율**’ 으로부터 출발 한다.



## 6) 유학생 문제와 국내 체류 전환

- 유학생 10만 시대
- 한국-이란, 고등교육협력 MOU 체결 (2016.5)
- - 문화와 언어 등 상호이해 증진과 관련학과 양성, 양국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 직접적인 협업 지원도 추진
- - 하반기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유학설명회(Study in Korea Fair)

## 7) 난민지원 강화

○ 연도별 난민현황  
 (1994. 1. 1. ~ 2016. 03. 31. 현재, 단위 : 건)  
 ※ 심사중 5,964명

구분 연도	신청	철회	심사결정종료
총계	16,979	2,008	9,007
'94-'09	2,492	494	1,665
2010	423	62	250
2011	1,011	90	339
2012	1,143	187	649
2013	1,574	331	586
2014	2,896	363	2,378
2015	5,711	280	2,134
2016. 1~3.	1,729	201	1,006

## 8) 종교갈등

-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중 이슬람국가 국민 유입;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고려인 등
- 중동 정책 중 이슬람 국내 국민 유입; 중동 지역 내 유학생 국내 유입 및 유출



## 9) 다수자 국민의 다문화 교육 강화

: 역차별과 반 다문화 정서  
성인다문화 교육 5%, 중고생 24%



## 10) 이민/다문화 관련 전공의 강화

- 2018년 개방적 이민정책 실시로 이민관련 과목 및 전공 늘어날 추세
- 다문화전문가 과정 설치 석박사 과정
- - 전국 31개 대학
- 사회통합기금법 실시
- - 이민영역 강화
- - 지방자치 다문화 영역 강화

## 4. 다문화사회의 문제

### 1) 이주민 인권 우리 아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온수도 나오지 않는 비닐 하우스가 기숙사  
...화장실도 없어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4명중 3명은 키스하려 했어요  
아빠라 부르라며 안마도 시켰어요  
한겨레 2014.08.22

## 2) 결혼이민자 차별 경험(도별)

구분		지역(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사회적 차별 경험	있다	27,112 (44.0)	2,629 (37.3)	2,709 (41.9)	4,039 (36.9)	3,529 (36.2)	2,873 (31.5)	3,979 (34.8)	4,570 (33.2)	974 (45.2)
	없다	34,521 (56.0)	4,422 (62.7)	3,760 (58.1)	6,911 (63.1)	6,233 (63.8)	6,236 (68.5)	7,457 (65.2)	9,194 (66.8)	1,182 (54.8)
전체		61,633 (100)	7,051 (1000)	6,469 (100)	10,950 (100)	9,762 (100)	9,109 (100)	11,436 (100)	13,764 (100)	2,156 (100)

$\chi^2=2011.61(df=15,p=.000)$



## 결혼 이민자 차별 경험(시별)

구분		지역(직할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회적 차별 경험	있다 41.1%	20,747 (44.4)	3,717 (39.0)	2,732 (44.6)	5,697 (41.2)	<b>2,168</b> <b>(50.9)</b>	2,320 (49.8)	1,401 (33.2)
	없다 58.9%	26,028 (55.6)	5,818 (61.0)	3,393 (55.4)	8,139 (58.8)	2,094 (49.1)	2,337 (50.2)	<b>2,814</b> <b>(66.8)</b>
전체		46,775 (100)	9,535 (100)	6,125 (100)	13,836 (100)	4,262 (100)	4,657 (100)	4,215 (100)

$\chi^2=2011.61$  (df=15, p=.000)

### 3) 종교적 갈등

이태원 이슬람사원, 터키가 새로 짓는다



이태원 이슬람사원 350억 들여 재건축... 2~3년內 완공  
서울 이태원의 명소인 한국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모스크)이 이르면  
2~3년 안에 장엄하고 웅장한 오스만 튀르크 양식의 대형 모스크로 재탄  
생할 전망이다. 한국 이슬람교가 건립된 지 40년이 된 현 성원 건물의 재  
건축을 추진하자 터키가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제안해 재건축 작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5.04.09)

## 불편한 시선, 불안한 공존... 한국에 무슬림 20만

한국일보 2015-01-24



- ◆ 서울 한남동 이슬람중앙성원에서 평소 때 1,000여명 예배
- ◆ 이슬람 성원(聖院)은 서울중앙성원을 비롯해 전국에 15개, 기도소 60여 개
- ◆ 국내 체류하는 해외이주 무슬림은 14만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175만6,000명) 10명 중 1명 꼴이다. 불법체류 무슬림(2만1,000여명)과 한국인 무슬림 3만5,000명을 포함하면 국내 무슬림은 모두 20만 명에 달한다.
- ◆ 경기도에 3만3,300여명(30.5%), 경남(14.4%) 서울(8.9%) 인천(6.6%) 등

## 4) 역차별과 반 다문화 정서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대한 견해 - G20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			Net Support (1)-(2)	
	좋은 일 (1)	좋은 일 아닌 일 (2)	모름/ 응답거절		
<b>세계 이주노동자 수용성 G20 긍정 59% (2015.11)</b>	G20 국가 평균	59%	29%	13%	30%
<b>긍정도(긍정-부정) 세계평균긍정도 +30%</b>	United States	42%	37%	21%	5%
	Canada	48%	37%	14%	11%
	Germany	44%	39%	18%	5%
	France	22%	58%	20%	-37%
	United Kingdom	30%	51%	18%	-21%
	Italy	18%	62%	20%	-44%
	Japan	22%	15%	63%	7%
	Argentina	39%	42%	19%	-3%
	<b>Korea, Rep (South)</b>	<b>39%</b>	<b>54%</b>	<b>7%</b>	<b>-15%</b>
	Turkey	29%	64%	7%	-35%
	Australia	29%	51%	20%	-22%
	China	81%	7%	12%	74%
	India	63%	35%	3%	28%
	Russian Federation	31%	48%	21%	-17%
	Brazil	39%	50%	11%	-11%
	Saudi Arabia	63%	24%	13%	39%
South Africa	32%	56%	12%	-24%	
Indonesia	35%	59%	6%	-25%	
Mexico	51%	41%	8%	10%	

\*SOURCE :WIN/Gallup International Annual Global Poll/ EOY, December 2015

## 5. 다문화 사회의 선교 방향

## 1) 문닫은 유럽 교회 건물들

...옷 가게·체육관·술집으로 변신

연합뉴스 2015-01-03

- 네덜란드 아넴의 **성 조지프 교회**는 한때 1천 명이 예배하는 도시의 구심점이었으나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다.
- 영국 에든버러의 한 **루터교 교회** 역시 높은 천장이 주는 분위기를 살려 소설 '프랑켄슈타인' 테마 바(bar)로 바뀌었다.
-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가톨릭 교회 건물은 전체 1천600곳 가운데 3분의 2로 집계되고 있다.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4년간 7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은 연평균 20여 곳의 성공회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지금까지 200곳** 안팎의 교회에 신도의 걸음이 끊겼다. **독일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515곳의 가톨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 미국에서는 2000~2010년 5천 곳의 새로운 교회가 생겼음에도 신도 수는 오히려 3% 줄어 머지않아 유럽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종교학자들은 보고 있다.

## 2) 종교에 대한 호감도 (한국갤럽, 2014)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단위: %) 자료: 한국갤럽



非 종교인 46% “호감 가는 종교 없다.”

종교호감도 10년 새 13%P ↓

... 불교 12%P나 떨어져 최악, 천주교는 증가

2014년 조사; 불교인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 종교인 50%



### 3) 다문화 사회의 선교 방안

- 선교의 새 **전기**로서 **다문화**(교회의 자기 반성)
- 대체되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 기독교적 대안운동의 모색(NGO 목회, 마을교회))
- 다문화 선교단체에 대한 관심(인적 물적 자원)
- 다문화 운동의 가치와 철학(총회, 노회 등)
- 새로운 교회 인구의 유입 대비(총회, 노회, 교회)



**감사합니다**

Memo.



[ 저녁예배 ]

# 다문화 사회와 디아코니아

(설교 본문: 룻기 1:1~5)

박천응 목사

Memo.

## [ 세미나 2 ]

# 디아코니아 측면에서 본 이주여성인권 보호

박란이 박사<sup>1)</sup>

### I. 서론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서의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주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인류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주(Migration)는 국경을 넘어 출신국을 떠나거나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난민, 결혼이주, 노동이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sup>2)</sup>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등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한국의 차별적인 이주민 현실을 우려했는데, 특히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이주민에게 행해지는 차별적인 사회분위기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노동력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급급했을 뿐 준비없이 국제결혼을 추진했으며,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문화 역량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종·문화적 특성을 갖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주를 주도했고, 여성은 단지 가족이주의 범위에서 이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이주가 중요한 맥락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신국과 유입국의 관계도 다양한 양상으로

---

1) 충남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신대학교 박사(기독교사회복지 전공)이자 대전이주여성센터 소장, 사회적협동조합 꿈아시아 대표.

2) IOM, 『이주용어 사전』(국제이주법 26호, 2011), 66.

변화되고 있다.<sup>3)</sup> 전 지구적 상황의 여성이주가 진행되면서 아시아지역은 전체 이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5-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는 지구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과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의 원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주민의 편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즉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에 대한 차별 및 배제와 일부 국민의 반다문화 정서 안에서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통로가 되기 위한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만능의 가치관과 폭력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진정한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고찰해보며,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와 이주여성의 인권현실을 분석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주민과 동등하게 소통하고 교제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사회의 다문화 흐름과 결혼이주여성 정책

### 1. 한국사회의 다문화 흐름

다문화(Multiculture)란 하나의 사회 안에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보편적인 가치를 향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4)</sup>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특성을 지녀왔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세계화, 지구화로 전 세계가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게 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정서는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민족주의가 많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또는 ‘다문화 여성’, ‘다문화 가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향유를 의미하는 다문화가 국제결혼가정에 대

3) 신은주,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12권 4호(2012), 306.

4)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가족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 62 (2011), 327.

한 특징적으로 호칭으로 변모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정부정책의 대상을 그대로 지칭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까지 한국의 다문화개념은 경제, 사회, 문화, 규범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동화의 개념이었고, 모든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주가 됨에 따라 실제적인 다문화 개념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개별적인 가치로서의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한국식의 가족유지”의 틀 안에서의 가치로 다문화를 통용하며 개인의 국적, 문화, 연령, 학력, 종교, 경제적 수준, 언어능력, 장애 등의 다양한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이라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은 빈부격차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직업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회현상은 직업에서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종을 만들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인 3D직종을 한국인이 피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산업화 및 경제력 향상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났다. 유교사회와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농촌에 남은 자녀 중 상당수가 만아들인 경우가 많았고, 이 같은 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농촌지역은 결혼 적령기 여성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며, 농촌 노총각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힘든 농사일과 농촌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했고, 이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농촌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몇몇 단체에서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안에서 점차 많은 수의 외국인 여성들

이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 2.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결혼이주여성이란 법적인 개념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뜻한다.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은 정부가 2006년 4월 여성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지원을 채택하면서 사용한 용어로,<sup>5)</sup>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또한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제2조 제3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란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한 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여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여성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법적으로 이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결혼과 동시에 국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sup>6)</sup>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는 초국적 결혼(trans-national marriage)의 하나로 사회학에서는 결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sup>7)</sup>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이 본격화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농촌사회의 성비불균형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몇몇 지자체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하여 아시아 저개발국의 여성의 결혼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결혼이주를 선택한 외국인 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한국남성을 선

5) 이무선, “인권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법학논총」 32(2014), 134.

6)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2009), 99.

7) 안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30-1(2012), 42.

택하여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매혼적인 결혼중개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여성의 결혼이주는 초기에는 연변중심의 조선족 여성들로 시작하였고, 통일교의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주관으로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교는 종교적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 신자간의 결혼을 추진하였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이 개입되면서 결혼을 위해 통일교에 가입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하던 국제결혼은 2000년대에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어 정부차원의 국제결혼이 본격화 되었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여성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의 순이다. 점차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과 중·소도시 등 한국사회의 전 지역에 정착하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결혼이주는 국적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한국사회의 강한 단일민족정서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처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과 인권문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갖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식개선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황인종의 피부색을 표현하던 ‘살색’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살구색으로 변경되도록 하였고, 2003년 시민단체인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국제결혼가정 및 그 자녀에 대해 ‘혼혈인’이란 차별적인 용어보다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2세’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sup>8)</sup>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는 2006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하였는데 ‘다문화’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그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국민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다문화주의가 시작되었다.<sup>9)</sup>

8) 이해경, “다문화 사회: 차이와 공존, 변화의 방향,” 『한국이주민재단』(2007), 47.

9) 김효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35.

### 3.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변화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많아지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법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다문화 담론이 활성화 되고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드러나면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법적 실체를 갖는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sup>10)</sup>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법령은 크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며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다수 부처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sup>12)</sup> 이 법률 중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다양한 변수가 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적법

한국은 1997년 기존의 국적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배우자가 된 이주여성에게 혼인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10) 문병기 외,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전달체계 분석 및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3), 20.

11)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법률신문, 2010년 2월 9일 .wikipedia.org.

12) 문순영, “현행법(안)을통해본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위한사회적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연구,” 「여성연구」1(2007), 120-121.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2004년 신설하게 되었다.<sup>13)</sup>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적취득의 절차는 “배우자의 귀책증명”, “경제적 능력 및 요건”, “자녀양육 증명”, “배우자의 확인서” 등 결혼이주여성을 두 번 울게 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들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 16조 1항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협약 23조의 4항,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에서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보호 의무 및 혼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취득의 불평등한 현실이 개선되어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sup>14)</sup>

## 2) 출입국관리법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인의 배우자로 입국하는 여성에게는 F6의 자격이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12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에 의하여 부여되는 비자는 일반적으로 동거(f-2)자격으로 체류기간이 1년 부여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였는데 2011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국민의 배우자(F-6)자격을 신설하였다.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를 받으려면 배우자인 한국 국민의 초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초청한 한국인은 배우자가 될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의무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협박과 폭력 등의 상황에서도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서 체류연장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이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결혼 동거 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www.law.go.kr, 2015. 9. 1.

14) 홍성필,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96 (2007), 32-33.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또는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 부양,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서 체류를 허가하고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귀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체류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최근 그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담당자는 불가피하게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sup>15)</sup>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의료서비스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와 인권보호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주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미등록상태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목적 (개정 2015. 12. 22, 시행 2016. 3. 23)

인권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보호보다는 가족유지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으로 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sup>16)</sup> 제10조에서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제공과 한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 적응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부처별 사업 대상자의 편중과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업,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강사, 다문화인 등 다문화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체 예산 중 인권옹호부분의 예산은 5%뿐으로 폭력피해나 인권유린 등의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sup>17)</sup>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하며 영주 및 귀화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건전한 국가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외국인 정책의 내용 중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사회통합에 공동가치 존중을 내세웠지만 결국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으며 그런 이민자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다문화 정책 반대”정서가 나타나 온라인상에 “국제결혼 피해센터,”<sup>18)</sup>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

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목적.

17) 김종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2012, 15.

18) “국제결혼피해센터”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의 모임으로 2010년 7월 30일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였고, 2015년 9월 회원수가 10,468명이다. 국제결혼피해센터를 비롯해 많은 반(反)다문화 카페들이 다문화 정책에 부정적이며, 온라인상의 게시물 “가출하

등 반(反) 다문화 카페가 20여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며, 결혼 이주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편중지원 시책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법령을 준수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최근까지 많은 결혼중개업체가 과장광고, 성차별·인종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영업과 허위정보제공 및 추가비용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나라들은 중개로 인한 국제결혼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들로,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협력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사라지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제공받았던 정보와 다른 열악한 처지의 배우자임을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0년부터 국제결혼중개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불법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가 아직도 66.5%나 되며<sup>20)</sup>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상품화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인종차별적 가치관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경우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결혼이주

는 베트남 여성들, 국제결혼 한국 남자의 눈물, 2015. 09. 07 기사” 등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사례인 것처럼 표현하는 글 및 방송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19)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이민정책의 이해』(서울 : 집사재, 2015), 187.

20) 김지영, 안성훈,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8-29.

여성들도 심각한 피해자가 됨을 인식해야 하며 장애, 전과, 폭력의 경력이 있는 대상이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경우 결혼의 피해는 고스란히 결혼이주여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중개업체는 420여 곳으로, 결혼비용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건당 1300만-1500만원, 동북아시아는 1700만-2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업체들은 수백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고 광고하며, 국제결혼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들을 음지화 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법적으로 신원을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을 경우 결혼중개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고 소비자보호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어떤 방법 및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혼은 귀책사유의 범주로 인정되지 않아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까지도 한국사회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었다. 가정폭력의 폭력성이 심각하게 알려지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판단되어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2006년부터는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7조의 2에 의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1999년 1월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장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이주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양육함에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그 자녀의 비밀전학이나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한국사회, 한국문화, 한국어 등의 교육과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 시작하여 인권에 대한 문제는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가족구조 안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결혼문화도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결혼문화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 III. 성서의 인권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

#### 1. 성서의 인권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것을 명령한다. 성서 속 약자의 개념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외국인체류자), 사회구조로 인해 억압당하는 사람, 장애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하며(신 10:18-19) 이들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명령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억압당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해방하며, 눈먼 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나그네를 보호하며,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시 146:6-9) 또한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과부의 옷을 빼앗지 말 것을 명령한다.(신 24:17)

이방인에 대한 성서적 배경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착취당하며 겪었던 고통과 애통함을 기억해서 다른 곳에서 온 이방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나누어 주라”라고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조건은 그들이 새로 정착한 사회의 법에 합당한 사람들이냐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 즉 존귀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강조하신 것이다.<sup>22)</sup>

성서에는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그네’와 ‘이방인’, ‘타국인’, ‘외국인’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약성서에는 히브리어 표현인 게르(גר), 토사브(טוּסָב), 네카르, 자르 등이 사용되었다.<sup>23)</sup> 이 중 성서에 자주 사용된 게르(גר)와 토사

21) 한승진, 한승진,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297-298.

22) 미주중앙일보, 2006. 5. 13. [www.koreadailly.com](http://www.koreadailly.com).

23) 박천응,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을 실천』(경기: 국경없는 마을, 2006),

브(גֵר)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성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르는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등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등한 법 적용을 받는 내용들에 주로 나타난다.(신 24:14, 레 24:22, 민 15:15, 신 10:17)<sup>24)</sup> 게르(גֵר)는 자기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가리키며 주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반영구적 체류자(Semi-Permanent Resident)를 의미한다.<sup>25)</sup> 이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거주지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즉, 게르에게 배려해야 하는 동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출애굽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sup>26)</sup>

또한 게르는 가나안땅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던 아브라함의 표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창 23:4)”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출 2:22)”에 등장한다. 즉 게르는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이며,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과 거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보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게르의 신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에 속했으며 자유인이라는 점에서는 종과 구별이 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고 혈연과 지연 등 기댈 수 있는 혜택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회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인권적인 탄압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sup>27)</sup>

토샤브(טוֹשָׁב)는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성서에서는 게르(גֵר)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토샤브로 살아가는 외국인은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타국인의 신분으로 가난한 외국인과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다.<sup>28)</sup> 이들은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같은 신분이며, 결혼이주민 중

63-65.

24) Frank Crüemamm, *Fremdenliebe und Identitätssicherung. Zum Verständnis der Fremden-Gesetze im Alten Testament* 「Wort und Dienst 1987」, 11-24.

25) 임태수, “이주노동자를 본국인처럼 사랑하라,” 「민중과 신학」8 (2002), 3.

26)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부천: 실천신학연구소, 2004), 132.

27) 하광락, “개혁주의 관점의 이주민 선교,” 「경동교회」www.kd77.kr.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폭력피해 등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가 없는 이주 여성 등과 비슷한 신분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권이 없는 사람으로 남의 집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sup>29)</sup>

민수기 35장 15절의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말씀에서 타국인은 게르를 사용하였고, 우거하는 자는 토사브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세분하여 구체적인 보호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적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보호받았다.<sup>30)</sup>

신약성서에서는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을 표현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보기로 가난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 곤궁에 처한 자 등을 돕거나 돌보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데,<sup>31)</sup>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마 25:40)라고 하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행위가 단순히 약한 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닌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는 섬김이며 지극히 작은 자의 인권을 보호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마 19:20)고 말씀하심으로 부자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의무를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그의 제자 된 성도들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힘쓰으로써 제자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sup>32)</sup>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2-27)고 하며 약자에 대한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28) 김해성. “구약성서의 외국인이주자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논문(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22.

29) 박천웅,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경기: 국경없는 마을, 2006), 64.

30) 김해성, 앞의 논문, 23.

31) 양혜원, 김희수, “사랑의 교회복지사역의 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 기독교사회복지 EXPO조직위원회, 2010), 60.

32) 앞의 논문, 64.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sup>33)</sup>

성서는 유대인의 3대 의무에 대해 구제(마 6:2-4), 기도(마 6:5-15), 금식(마 6:16-18)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신성한 의무 중에서도 첫 번째 의무였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위하여 디아코노스(Diakonos, 집사)제도를 마련하였고, 사도행전 6장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디아코노스를 택하여 구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실천은 사회봉사를 기도와 말씀전파의 활동으로부터 구별하여 전문화, 체계화 시킨 것이며 그들이 약자들을 돌볼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전문적인 돌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34)</sup>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동등한 자로 설명하며 주린 자들과 곤궁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여김을 받고,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 당시의 가장 보잘것없고 멸시 받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였으며,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들”과 연대하며 이들을 예수님의 형제라 호칭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께 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5)</sup>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할 것을 요청하며(마 6:1) 구하는 자의 청하는 대로 주며 거절하지 말 것(마 5: 42),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마 5:7)을 말씀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곤궁에 처한 자를 도울 것을 강조하는데(눅 10:25-37),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이웃과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sup>36)</sup>

또한 성서는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빠를 잃고 우는 두 자매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에 대해 기록하였으며(요 11:35),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하며 그 아들을 살려 준 이야기(눅 7:13-15),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기적을 베푸시며(막 6:38-44), 가난한 무리를 목자 잃은 양 같다고 하며 애처롭게 여긴(막 7: 34)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

33)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81-82.

34) 양혜원. 김희수, 앞의 논문, 64.

35) 김한옥, 앞의 책. 160.

36) 양혜원. 김희수, 앞의 논문, 65.

하였다.<sup>37)</sup>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어졌다.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행 2:44-47), 바울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이웃사랑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강조하며 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갈 6:2), 가난한자를 기억하며(갈 2:9-10)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약 1:27)을 가르친다. 이처럼 성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돌봄의 실천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구제와 섬김이 교회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sup>38)</sup>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서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땅의 근본 소유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으므로 그 백성들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라는 사회 환원의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닌 신앙공동체였기에 전 백성이 교회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 나라로 그 사회 안에 있던 여러 형태의 결핍된 현상들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들과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는 인간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성서 속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들은 불리한 이주여성의 신분이었으며, 결혼하였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성서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 1) 하갈

창세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12:7; 13:14-17; 15:5-7, 18-21)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과 하

37) 한승진,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298-299.

38) 양혜원. 김희수, 앞의 논문, 65.

39) 김한옥, 앞의 책, 160.

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었으며 창세기 16장에 나타나는 사라의 불임(不妊)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15:5)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상의하여 첩으로 들이게 되는데, 당시 하갈의 신분은 비천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갈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것으로 인해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하갈이 임신하여 불임중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자 억울함을 느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게 된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여 임신부의 몸인 하갈이 도망치도록 만드는데 하갈이 위기의 상황인 광야에 내몰려 절박한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며 위로를 베푸신다.

당시의 사회는 창세기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이며 종의 신분에서는 결혼하여 임신을 해도 주인에 의해 그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거나 내쫓기는 등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16장 5절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에서 사라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이라고 하며, 여전히 하갈에 대한 호칭을 “나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브라함 또한 하갈에 대해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며, “당신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하갈을 부르고 있다. 이 내용은 이주여성인 하갈이 결혼을 해서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였음에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신분이 아닌 후대를 낳기 위한 도구로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분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sup>40)</sup>

위의 내용에서 하갈이 처한 현실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주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또는 노부모 부양과 출산을 위한 노동력의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현실과도 다를 바가 없다.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하갈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폭력과 학대로 가정에서 쫓겨 난 한국의 이주여성이 울부짖을 때 과연 누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여성이라는 불리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하갈이 임신부의 몸으로 광야로 내몰린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고통의 신음을 듣고 하갈을

40)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9-13.

만나 이름을 불러주시며 뱃속의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갈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의 ‘이스마엘’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고 하갈의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하신다. 성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며 축복을 약속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 뒤에서 외면되고 소외된 하갈의 외로움에도 눈길을 주신다. 이처럼 약자의 고통과 눈물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보호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최고의 인권보호자라 할 수 있는데, 교회 또한 약자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돌보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2) 다말

다말은 창세기 38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큰며느리로 등장한다. 유다는 팔레스타인의 중앙 고원 지대에 있는 ‘아들람’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 이방여인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과 셸라 등의 세 아들을 낳았다.(창 38:2-5)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 엘과 결혼하여 첫째 며느리가 되지만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惡)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녀를 얻지 못한 채로 죽자 엘의 동생이자 유다의 둘째아들인 오난과 결혼하게 된다. 고대 근동지역 유목민의 풍습에는 형이 대(代)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서 죽을 경우 동생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수혼 풍습(levirate marriage)이 있었다. 신명기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수혼 풍습으로 지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는 아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죽은 자의 형이나 동생이 자신의 남자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야 했는데 이는 죽은 자의 이름을 유지시키고, 가족 내에 그의 자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부양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과 같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습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대대로 지켜야 할 신성한 법이기도 하였다.(신 25:5-10; 마 22:23-30; 막 12:18-25; 눅 20:27-36)<sup>41)</sup>.

수혼 풍습에 의해 과부가 된 형수 다말과 결혼한 오난은 형의 가계를 이어갈 후사를 낳아야 했는데, 오난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므로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셨다. 이로 인해 다말은 셋째 시동생인 셸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의해 친정으로 보내졌고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다말은 신전 창기(temple prostitute)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41) 강성열, 앞의 논문, 9-13.

유다와 동침함으로 남편 가문의 대를 잇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성서는 자신의 비천하고 연약한 사회적 지위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새로 남편 가문의 대를 이루려고 노력한 이주여성 다말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용기를 내어 가정 또는 자녀를 지키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 폭력 피해로 내쫓김을 당한 이주여성들이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권리는 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체류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에 대한 주거권 등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차별적인 사회제도나 편견이 아니면 빼앗기지 않을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문화와 언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주여성들의 용기를 칭찬 하기는 커녕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아이를 키우겠느냐,” “외국인에게 아이를 키우게 하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지 모른다” 등의 편견과 불공평한 잣대로 이주여성이 모성적인 권리를 차별하고 빼앗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성서의 다말에 대한 기록처럼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진실한 사회적인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 3) 룯

룯기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살이 이후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이야기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압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가 나오미의 도움으로 보아스와 결혼한 여성이다. 룯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동체가 축복받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인종과 민족 및 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폭넓은 구원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sup>42)</sup>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아내 나오미와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모압 여자인 룯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엘리멜렉

42) 한국염, “룯기를 통해본 이주민 인권 선교의 실제,” 2010, [www.catholic.or.kr>bbs>attboard>read](http://www.catholic.or.kr>bbs>attboard>read).

과 그의 두 아들이 죽자 혼자 남은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안전한 삶을 살라고 권한다. 그러나 롯은 과부로 사회적인 약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는데(룻 1:16-17), 낯선 땅 이스라엘에서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던 롯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아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하였다.(룻 4:16-17) 롯은 모압출신의 이주여성임에도 다윗의 조부(祖父)인 오벳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마 1:5)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롯기 4장 12절의 말씀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 복의 근원이 된 롯을 하나님이 복주시며 축복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룻 4:12)”

한국은 국제결혼이 시작되는 때부터 평균 15살이 넘는 나이차이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많았다. 대전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 중에는 40살이 넘는 나이차이가 나거나, 당사자인 이주여성 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전처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나이차이로 배우자인 한국 남성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내쫓기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롯기의 기록에서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더 좋은 삶을 선택하라고 조언하였고,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하자 며느리 롯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혼자 지내는 며느리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대하며 가문의 부유한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성사시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은 롯기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대부분 한국의 가정에서는 과부가 된 외국인 며느리는 그 즉시 짐처럼 취급을 당하며 되도록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롯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하며 사회적 약자인 과부 나오미와 롯을 도운 보아스 역시 모친인 라합을 통해 다문화적인 포용과 소통이 가능한 사고를 가진 인물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사고 또한 다문화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공동체속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착민과 이주민이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다문화사회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출 20:10; 신 1:16, 5:14, 24:14, 29:10, 31:12) 성서는 이방여인이 낯선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이 사회의 소외계층인 여성과 이방인을 품으며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을 보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sup>43)</sup> 교회는 이주여성들을 품고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들의 삶에 공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2. 결혼이주여성 인권 현황

2015년 필자가 전국 155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가정 내의 인권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언어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71.6%였으며 정서적 폭력은 60.8%, 신체적 폭력이 55.5% 순이었다. 감금·통제의 피해도 47%였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장을 빼앗아 관리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은 44%였다. 이외에 낙태 등의 건강권침해가 34.8%이고, 성적폭력 및 외도가 각각 27.3%와 26.8%였다.

이주여성의 경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상점, 식당, 이웃 등에서의 차별사례가 많았다. 사람들의 힐끔거림(56.1%), 무시(36.1%), 욕설(33.5%), 의심(46.5%) 등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의 폭력상황에도 외국인이라고 믿지 않거나(51.6%) 불친절(43.9%)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의 제도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공공기관에서도 불이익을 자주 경험하는데,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인권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무시로 모욕감을 느꼈다(51.6%), 이유 없이 체류연장의 불이익을 받았다(22.6%), 외국인이라고 가

43) Jürgen Ebach, *Aspekte multikulturellen Zusammenlebens in der hebräischen Bibel*, (Frankfurt a.M. 1983) 21.

해자로 몰렸다(28.4%)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도 많았는데, 불친절을 경험한 공공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고, 주민센터 20.3%, 경찰 6.8%, 법원 5.4%, 병원 4.1% 순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인 권리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인권침해는 이주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의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여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크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 둘째는, 의사소통 문제, 셋째는, 성역할과 가족구조 문제, 넷째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문제이며, 다섯째는 사회적 편견 문제, 여섯째는 체류와 국적취득 문제, 일곱째는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사회 안전망 문제이다. 이 중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문제, 성역할과 가족구조 문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문제는 심한 경우엔 부부갈등,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체류와 국적취득의 문제는 부부의 동등한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2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망한 중국여성의 사례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사례여성은 결혼초기부터 무직인 남편을 대신해 식당 일 등을 하며 생계를 도맡아 왔지만 끊임없이 배우자의 통제와 폭력, 협박 등에 시달려왔고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하였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11년 전 어린 나이에 꿈을 안고 낯선 땅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동안 예쁜 딸 4명을 두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세한 가정사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소문난 살림꾼이었고, 착하고 일 열심히 한다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뇌사 상태로 4일을 있다가 말입니다.<sup>44)</sup>

### 1) 경제적 문제

이주여성의 많은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조사한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 물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44) 사망한 여성에 대한 추모사중 일부 발췌

돈을 벌기를 희망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망가거나 본인이 번 돈을 모두 친절로 빼돌릴 것이라는 편견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강한 욕구로 이어지거나 실제로 돈을 벌어야 할 긴급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부부나 가족 간 폭력이 발생하거나, 신분증과 여권 등을 빼앗거나 감금하는 등 또 다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2) 의사소통 문제

이주여성은 가족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국인과 소통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가정이 많으며, 한국 사람을 만나야 한국말을 빨리 배운다는 이유 또는 밖에 나가면 나쁜 물이 든다는 등의 제한으로 한국어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 거주하는 곳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도시와 먼 경우, 부양해야 할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돌보아야 하는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특히 외출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주여성의 외로움은 우울증 등의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3) 성역할과 가족구조 문제

대부분의 한국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거의 전부를 이주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데 가족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성역할이 불평등할수록 가족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확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어서 시댁가족과 함께 살거나 배우자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사노동을 하는데, 시댁이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나 농사를 짓는 경우는 기본적인 가사노동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주여성은 가사노동의 어려움 뿐 아니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댁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화차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대부분의 가사 일이 무급으로 여겨짐으로 인해 결혼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성역할의 구조는 본국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한 이주여성의 삶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 4) 임신, 출산, 자녀양육 문제

이주여성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임신을 하여 입덧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본국의 음식이나 과일 등에 대한 그리움으로 외로움과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때에는 문화차이, 경제적인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양육방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주여성의 건강상태나 질병여부가 정확히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를 받는 상황에 놓여 불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에 따른 문화차이, 육아에 대한 문화차이, 자녀 양육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엄마의 방식은 제외되고 한국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이주여성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 5) 사회적 편견 문제

한국은 단일민족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존재한다. 사회통합의 정책 역시 결혼이주민의 적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름 빠름의 한국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신속히 동화되길 바라는 정책이다. 가족 및 사회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가족관계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정해진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면 그때부터는 돈이 목적이거나 결혼을 하려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급속히 진행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은 무분별하게 중복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이 안정되거나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전에 다문화반대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이주여성을 가해자로 내몰아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 6) 체류와 국적취득의 문제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에도 참는 이주여성이 많은 이유는 이들의 체류 문제가 주로 남편이나 시댁가족에게 의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취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유무에 국적취득자격의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이주여성은 피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녀의 출산을 체류의 자격에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한국의 법률은 결혼이주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출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의 유무를 결혼생활의 진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은 것이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체류가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문제가 개인적인 공간 또는 사적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혼자 힘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체류담당자의 개인적인 해석도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짧은 기간에 결혼생활의 파경을 맞을 경우 한국의 체류법 상으로는 체류기간 만료 즉시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국에서의 결혼비용 등으로 진 빚 등을 갚기 위해 또는 본국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 이주여성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2012년에는 이혼하여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없는 이주여성이란 이유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자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폭력과 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법의 체류문제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결혼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가족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체류권의 악습이 담겨있다. 유엔의 권고처럼 결혼이주 자체를 하나의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선녀와 나무꾼의 정서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 국적을 취득해 주면 도망간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실제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사회는 이들을 진정한 한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으로만 이들을 인식하고 있다.

귀화 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적신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한국어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이다. 지난 2012년 사망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무려 8년이나 장애남편과 시부모를 모시고 전처의 딸까지 양육하며 생활했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귀화를 취소당하였다. 특히 남편이 무직이거나 시댁이 농사를 짓는 경우 대부분

분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사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느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한국인’을 부양하면서도 ‘이주민’이며, 가족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지만 한국의 법에 의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처지에 놓이는 현실이다.

#### 7)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사회안전망 문제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기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어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sup>45)</sup>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만 한국인 배우자의 아내 또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母)로서의 신분을 통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력이나 인권침해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살아야하는 상황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위협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가가 그들의 사회적 위기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의

45)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이담북스, 2013. -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튼우즈 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으면서부터이다. 한국은 크게 1·2·3차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 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 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편견 등으로 국가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간단체와 교회 등 제3의 영역(Sector)에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복음의 생명력”으로 바라보며 합법적 이주민 뿐 아니라 망명 및 미등록 체류자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최후의 안전망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생존과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 3.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디아코니아 실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누가 우리의 진짜 이웃인가를 질문하신다. 또한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힘에 반대하며 가난한 사람들, 약자와 죽어가는 자를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을 강조한다.

세계화시대의 오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선교와 해외봉사를 가며, 선교를 위해 현지어를 배우고, 기후, 음식, 문화와 풍습을 공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한국 사회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현지인인 이주여성들에게는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의 관심을 쏟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배우며 한국에서 살기위해 발버둥 친다. 우리가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들이 먼저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복음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원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교회가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며 공동체의 문제와 사회 정책, 제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했다. 성서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지목하여 보호하며, 압제당하는 자들, 정의를 베푸는 것을 외면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강탈한 자들, 과부에게서 재물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신다.(사 10:1-2)<sup>46)</sup>

최근까지 한국은 이주민을 경제상황과 연관하여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이주

46) 다이애너 S. 리치먼드 갈랜드, 이준우역, 『교회사회사업』(서울: 인간과 복지, 2001), 81-82.

민에 대한 인식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가난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을 한국인의 친구, 이웃 주민, 지역사회 의 구성원, 공동체의 멤버로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 인식개선 교육이 생략된 결과이다. 특히 교회는 이들을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 외국인, 동남아 출신 등의 편견에 의한 꼬리표가 아닌 친구, 이웃,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새로운 구성원이 생길 경우 그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거나 알리는 절차를 갖게 된다. 한국사회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외국인을 소개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신문, 뉴스 등의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일부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관점과 편견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공동체의 참여자로 인정해야 하며, 이와 같은 선한 인식개선 운동에 교회가 먼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 등의 단어가 사회 안에서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다문화”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우리와 다른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

성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을 소개한다.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둔 절박한 상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타난다. 딸의 병으로 절박한 심정이었을 이 여인은 인종, 문화, 편견, 종교, 지역사회, 정치적인 벽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벽과 경계를 넘어야 한다.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장벽 중 가장 무서운 장벽은 이들을 기죽게 하는 한국인의 편견인데, 이러한 편견은 이주여성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며, 자립과 참여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교회는 따뜻하게 이들을 품고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이들이 심리적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러한 교회의 도움이 언어와 문화와 교육의 장벽 등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이주여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는 이웃 사랑이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말하며 이것을 실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서 곳곳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설명한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며, 내 것을 나누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그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신 섬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먼저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의와 선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을 통해 모든 다양한 문화적 세계에서 교차하는 도구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섬김이며, 교회의 인간다움이다.

디아코니아(Diakonia)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곳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에게 봉사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법과 제도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이며, 가난한 삶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sup>47)</sup> 이는 교회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며, 그런 섬김을 통해서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국가와 교회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주민에게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서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게 하려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며 다문화적이지 않은 태도가 된다. 각 사회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있는 데 그 원리가 되는 대표적인 문화를 주류문화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 사이의 평등을 지향해야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문화가 존재하고, 기존의 주류문화를 지키기 위해 종종 개인의 자유를

47) 다이애너 S. 리치먼드 갈랜드/ 이준우 역, 『교회사회사업』(서울: 인간과 복지, 2001), 171-172.

침해하며, 고유한 소수의 문화를 절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는 이주민에게 차별과 소외감 또는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소외감과 불편이 교회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는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복음은 이미 다양한 문화적 해석과 형태로 존재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립과 갈등, 적응과 동화, 변혁과 변화를 경험해 왔다.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수많은 언어로 다양하게 불리어지며, 문화에 따라 예배형식과 교회의 제도와 절기 또한 매우 다양하다.<sup>48)</sup>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3%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응답은 불과 8.6%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였는데 개신교를 불신하는 이유 중 1위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24.8%), 2위는 교회 내 비리 및 부정부패가 많아서(21.4%)라고 하였다. 또한 2015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종교별 신뢰도가 천주교(39.8%), 불교(32.8%), 개신교(10.2%) 순으로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또한 신부(51.3%), 스님(38.7%), 목사(17%) 순이었다. 한국사회의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라고 하였고, 한국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로는 “평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전도를 위한 교회 내적인 목표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을 돌려 세상 밖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IV. 제언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디아코니아 역할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자, 또는 소외된 이웃으로 만드는 사회의 부조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며

---

48) 최영근, “바울의 변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 하는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이해와 실천』(대전, 한남대학교 GMLP, 2015), 50.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은 큰 것,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작은 것 연약한 것,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치로 하며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성서적인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여 차별과 편견 등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교정시킬 수 있도록 성서적 인식개선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모든 불의로부터 보호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에게 차별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뿐 아니라 성과 계급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불공평한 삶의 환경에서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살피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안에서 어떤 욕구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역할이다.

셋째, 교회는 성서의 진리에 따라 이웃사랑과 섬김의 계명들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여성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뿐 아니라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제도적 장치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약자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들의 욕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성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데, 인종과 문화가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대하여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간격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한옥.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부천: 실천신학연구소, 2004.
- 김태환.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 집사재, 2015.
- 박천응.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경기: 국경없는마을. 2006.
-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 이담북스, 2013.
- Garland, Diana S.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이준우 역. 『교회사회사업』. 서울: 인간과복지, 2001.
-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62(2009), 5-33.
- 김지영, 안성훈.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월』13-AB-04(2014).
-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가족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인문연구』(2011/8).
- 김해성. “구약성서의 외국인이주자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 김효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2012).
- 문병기, 이석원, 김준현.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전달체계 분석 및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2013).
-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연구.” 『여성연구』72-1(2007), 109-142.
- 변수정 외.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 신은주.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12-4(2012/12).
- 안 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30-1(2012).
- 양혜원, 김희수. “사랑의 교회복지사역의 현황 및 발전방안.” 『기독교사회복지 EXPO』(2010).
- 이무선.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법학논총』32(2014).

- 이혜경. “다문화 사회: 차이와 공존·변화의 방향.” 「한국이주민재단」2007.
- 임태수. “이주노동자를 본국인처럼 사랑하라.” 「민중과 신학」8(2002/3), 41-66.
- 최영근. “바울의 변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 하는가.” 「건강한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이해와 실천」(2015), 45-57.
- 한승진.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289-313.
- 홍성필.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2007), 27-42.
-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2009).



Memo.

[ 저녁예배 ]

## 저녁예배 설교

손인웅 목사<sup>1)</sup>

Memo.

1) 디아코니아 코리아 상임대회장이자 덕수교회 원로목사.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 033,252,5959 [www.chdongbu.or.kr](http://www.chdongbu.or.kr)  
**발행** ■ 춘천동부교회 **담임** ■ 김한호 목사 **사회봉사위원장** ■ 심우섭 장로

copyright©2016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All Rights Reserved.  
본 책자의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전제나 복사가 허락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